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수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128 발의연월일: 2024. 10. 31.

발 의 자: 박수영·서천호·정성국

천하람 • 김기현 • 진종오

김석기 · 김종양 · 권성동

이종욱 · 최은석 · 이인선

인요한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소기업·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폐업, 노령 등 공제사유 발생 전 공제계약을 해지하여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기타소득으로 15% 세율로 원천 징수 후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상 시 종합소득으로 합산 과세함. 이에 공제 장기가입자가 해지하는 경우 소득결집 효과로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세부담액이 급증하는 실정임.

반면 유사 제도인 사적연금은 임의해약 시 기타소득으로 15% 세율로 원천 징수 후 종결하고 있어 과세 방법을 일치할 필요가 있음. 이에 소기 업·소상공인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을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 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(안 제14조제3항제8호 바목 신설).

법률 제 호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제3항제8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바. 제21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소기업·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 일시금

부 칙

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14조(과세표준의 계산) ①・②	제14조(과세표준의 계산) ①・②		
(생 략)	(현행과 같음)		
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	③		
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			
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.			
1. ~ 7. (생 략)	1. ~ 7. (현행과 같음)		
8.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타	8		
소득(이하 "분리과세기타소			
득"이라 한다)			
가. ~ 마. (생 략)	가. ~ 마. (현행과 같음)		
<u> <신 설></u>	<u>바. 제21조제1항제18호에 따</u>		
	른 소기업·소상공인 공제		
	부금의 해지일시금		
9. (생 략)	9. (현행과 같음)		
④ ~ ⑥ (생 략)	④ ~ ⑥ (현행과 같음)		